박람회 참가약관

제 1 조 (용어의 정의 및 계약)

1. 본 박람회는 주최자인 (주)동아전람과 전시자인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와의 계약으로 한다.
2. "전시자"라 함은 본 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출품신청서를 제출한 개인, 회사, 조합 및 단체 등을 말한다.
3. "박람회"라 함은 (주)동아전람 주최 「**제13회 서울 건축·인테리어 박람회**」를 말한다.
4. "주최자"라 함은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17길 49 데시앙플렉스 1019호 (주)동아전람」 을 말한다.

제 2 조 (출품신청)

1. 박람회 출품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출품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참가비 50%를 납입함으로써 본 약정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와 출품 예정 품목이 박람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주최자는 출품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 3 조 (전시면적 배정)

부스배정은 (주)동아전람의 고유한 권한이며 (주)동아전람은 출품신청 접수순, 면적, 전시품의 성질, (주)동아전람 박람회 참가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전시자별 전시위치를 배정한다.

제 4 조 (전시실 관리)

1. 전시자는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스탠드(Stand)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출품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박람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또는 주최자의 허가 없이 직매 행위와 전시장 분위기를 극도로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주최자는 즉시 전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3.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최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실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등 주최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전시기간 중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또는 질병·전염병으로 인한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피해 보상의무가 없다.

제 5 조 (납입조건)

1. 전시자는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신청금을 출품신청서 제출시 납입해야하며 잔금 50%는 잔금 마감기간 내에 납입해야 한다.
2. 전시자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독촉 할 수 있으며 독촉 후에도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 및 전시 참가를 임의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 납입한 참가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6 조 (해약)

전시자가 참가포기 및 배정된 전시면적 사용을 포기 또는 거부할 경우, 이미 납입한 참가비 및 부대비용에 대해서 주최자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최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전시자는 기 납입한 참가비 및 부대비용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 (박람회 취소 또는 변경)

주최자가 박람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하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참가비 외 부대비용과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또한 천재지변, 질병 · 전염병 등의 불가항력인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박람회가 취소 및 개최기간이 단축되는 경우에도 참가비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개최일이 변경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는 변경된 박람회 개최일로 이월한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기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8 조 (장치물 및 전시품 진열)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동안 장치물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박람회 종료 전에 전시품을 반출할 수 없다.

제 9 조 (장치물 및 전시품 반출)

전시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모든 장치물 및 전시품을 반출 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최자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은 즉시 주최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전시장 경비 및 위험부담)

1. 주최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조치를 취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기간 중 발생되는 배당 면적내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안전사고,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가입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4. 박람회로 인해 전시자가 관람객 등 제3자와 민·형사상의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배상 등 일체의 책임소재는 전시자에게 전적으로 귀속되며 주최자는 이를 책임지지 않는다.
5. 전시장 내의 안전사고 등 소비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제반의 조치는 전시자가 취하며 만약의 사고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제 11 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반드시 적절한 불연 처리가 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화재예방조치를 취하고, 화재발생시 모든 책임은 전시자에게 있다.
2. 주최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 조 (안전·방역규칙)

1. 행사 설치/철거 시 전시장내에서 안전장비(안전모, 안전화 등)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2. 행사 설치/철거 시 현장 감독관을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 기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전시자는 (주)동아전람 및 전시장측에서 요청하는 안전 및 방역관련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 (분쟁해결)

참가약정의 해석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간에 발생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르며 그 판정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